

『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4월 10일

나. 발 의 자 : 길윤옥 · 구자근 · 김상조 · 박세채
우진석 · 윤서규 · 이갑선 · 정근수
허 복 · 황경환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4월 21일

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길 윤 옥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공공시설의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임(可妊)여성
에 대하여 생리기간중 수영장 사용료 감면 혜택
- 저출산 시대 여성의 원활한 활동지원 등 여성들의 복리증진
도모

다. 주요내용
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
료의 10%를 감액토록 규정(안 제10조제6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시설중 수영장 시설을 매월 이용하는 정기회원 가운데 가임 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에 대해 감액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%를 감액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가임기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 활성화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